

카타르(Qatar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2002년(퇴직 및 연금), 2003년 시행.
- 현행법 : 2002년(퇴직 및 연금), 2003년 시행; 2007년(해외에서 근무하는 걸프협력회의(GCC) 국민까지 보호범위 확대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 - ※ 참고 : 특정 노인, 장애인, 가족 수당 하의 유족에게 소득조사에 기초한 급여 지급

3 적용대상

-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 일부 직종에 근무하거나 걸프 협력 회의 국가(바레인(Bahrain), 쿠웨이트(Kuwait), 카타르(Qatar), 사우디아라비아(Saudi Arabia), 또는 아랍 에미리트 연합(United Arab Emirates)) 중 한 곳에서 근무하는 카타르 국민
- 예외 : 자영자; 가게, 가족, 해외근로자
- 군인을 위한 특별제도 존재

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총 월 소득의 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 또는 최대 소득은 없음
- 자영자 : 적용 불가
- 사용자 : 총 월 임금지급액의 10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 또는 최대 소득은 없음
- 정부 : 적자와 관리비 재정 지원 및 사용자로서 기여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급여
 - 노령연금 : 최소 15년의 가입기간(추가납입 보험료 포함)을 가진 60세인 자
 - 증액노령연금의 자격을 충족하거나 지급받기 위해 가입자가 최대 5년까지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음
 - 조기연금 : 최소 15년의 가입기간을 가진 40세인 자
 - 노령보조금 : 15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60세인 자

- 장애연금 :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완전한 근로능력불능으로 판정되어야 함

- 유족급여
 - 유족연금 : 사망자가 사망 시 가입대상인 직종에 근무 중이었거나 연금 수급자였던 경우에 한함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미망인(홀아비)들; 미혼인 실업 상태의 연령 무관한 딸과 손녀; 21세까지의 아들과 손자(전일제 학생일 시 26세; 장애자일시 제한 없음); 부모; 또한, 수급 자격이 있는 아들이나 딸의 부재 시, 형제 및 미혼인 실업 상태의 자매를 포함함
 - 여성 유족을 위한 유족연금은 (재)혼인 시 중지되지만 그녀가 이후에 이혼하거나 미망인이 된다면 재개됨
 - 유족보조금 : 사망자가 유족연금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미망인(홀아비)들; 미혼인 실업 상태의 연령 무관한 딸과 손녀; 21세까지의 아들과 손자(전일제 학생일 시 26세; 장애자일시 제한 없음); 부모; 또한, 수급 자격이 있는 아들이나 딸의 부재 시, 형제 및 미혼인 실업 상태의 자매를 포함함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급여
 - 노령연금 : 연금액은 <가입자 퇴직 전 5년 동안의(공공부문 근로자에게는 마지막 총 월 임금액임) 총 월 평균소득의 5% × 가입기간 년도 수>에 해당하는 금액임
 - 월 최저 노령연금은 가입자 퇴직 전 5년 동안의(공공부문 근로자에게는 마지막 총 월 임금액의) 총 월 평균 소득의 75%임
 - 월 최고 노령연금은 가입자 퇴직 전 5년 동안의(공공부문 근로자에게는 마지막 총 월 임금액의) 총 월 평균 소득의 100%임
 - 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 대비 조기 청구하는 매년마다 2%(자진 퇴직 시)에서 2.5% (기타 근무기강관련 사유로 해고 시) 감액지급
 - 노령보조금 : 가입자 납부 보험료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
- 장애급여
 - 장애연금 : 연금액은 <장애 발생 전 마지막 5년 동안의(공공부문 근로자에게는 마지막

총 월 임금액의) 가입자 총 월 평균 소득의 5% × 가입기간 년 수 또는 15년(업무 관련 장애로는 20년) 중 더 큰 금액>임

- 월 최저 장애연금은 장애 발생 마지막 5년 동안의(공공부문 근로자에게는 마지막 총 월 임금액임) 가입자 총 월 평균 소득의 75%임
- 월 최대 장애연금은 장애 발생 마지막 5년 동안의(공공부문 근로자에게는 마지막 총 월 임금액임) 가입자 총 월 평균 소득의 100%임

○ 유족급여

• 유족연금

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75%가 자녀가 없는 미망인(홀아비)에게 지급됨(두 명 이상의 미망인이 있다면 100%가 동등하게 나누어짐); 자녀가 존재할 시 33.3%(두 명 이상의 미망인이 있다면 50%가 동등하게 나누어짐)
 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가 한 명의 수급자격이 있는 고아에게 지급됨; 두 명 이상의 고아에게는 66.7%가 동등하게 나누어짐; 완전한 고아에게는 75%(두 명 이상의 완전한 고아에게는 100%가 동등하게 나누어짐)가 지급됨
 - 그 외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 급여 : 사망자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6.7~50%가 그 외의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지급됨
 - 유족연금의 최대 합은 사망 전 5년 동안의(공공부문 근로자에게는 마지막 총 월 임금액임) 사망자의 총 월 평균 소득의 100%임
- 유족보조금 : 사망자 보험료 납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됨

7 관리운영기관

○ 재무부(Ministry of Finance)

- <https://www.mof.gov.qa/en/Pages/default.aspx>
- 전반적인 감독 제공

○ 일반 퇴직 사회보험기관(General Retirement Social Insurance Authority)

- <https://www.grsia.gov.qa/>
- 제도 관리 및 보험료 징수

<2018년 ISSA 자료>